

의안번호	제 98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2월 14일

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의안
번호 987

제출연월일 : 2022년 2월 1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 개요

(단위 : 천원)

출연기관	출연액			출연 필요성
	계 (A=B+C)	기정 (B)	금회추경 (C)	
충북연구원	4,729,901	4,620,000	109,901	- 연구직 승진 가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(승진가산금) 지원 필요

※ 관계법령(출연근거)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,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

3. 주요내용

□ 충북연구원 추가 출연금 지원 : 109,901천원

- 타 시도 연구원과의 임금격차*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가 출연

* 임금격차 비율('20년 기준) : [전국평균 대비] 신규 90.4% → 10년 근속 78.6%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붙임

< 출연 변경계획 >

사업명	충북연구원 운영	금출연금액	109,901천원		
출자·출연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(재)충북연구원 ○ 대표 : 정초시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- 인력 : 정원 46명(현원 42명) - 주요사업 :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				
사업내용		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승진(11년차, 16년차) 시 前 직급 평균 연봉액의 7% 가산에 따른 인상금 ○ 금회 출연금액 : 109,901천원 		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 시도 연구원과의 현격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(승진가산금) 지원 필요 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○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 		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연구원은 전국 최초 설립('90.5.) 이후 지역 현안 조사·분석,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충북의 대표 연구기관이나 ○ 타 시도 연구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신규자(전국평균 대비 90.4%)에 비해 10년이상 장기근속자(전국평균 대비 78.6%)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보수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○ 이에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원에 대한 '승진 가산제도'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가 지원이 필요함 				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기순	조미숙	이경화	220-2123

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	전화번호 : 043-220-1147 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4.20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'22.1월말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	
	98		42	56				
임원 ('22.1월말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	
	이사장	이OO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	
	이사(당연직)	서OO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	재임기간			
	”	신OO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재임기간			
	”	이OO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재임기간			
	”	이OO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	재임기간			
	”	강OO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	재임기간			
	”	정OO	충북연구원장		재임기간			
	이사(선임직)	한OO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주OO	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유OO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백OO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고OO	대원대학교 총장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안OO	청풍로펌 변호사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김OO	충북대학교 총장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차OO	청주대학교 총장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차OO	충북경제포럼 회장		20.10.19 ~ 23.10.18			
	”	고OO	극동대학교 교수		20.10.19 ~ 23.10.18			
감사(당연직)	박OO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	재임기간				
감사(선임직)	김OO	공인회계사		20.10.19 ~ 23.10.18				
주요기능	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							
자본금(기금) (단위:백만원)	2,171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-	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백만원) '20.12.31기준	자산	15,589	
		예산액	5,706	5,452		5,645	부채	2,072
		지자체 지원액	4,400	4,400		4,450	자본	13,517
2020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10,272			11,986		-1,714		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운영경비)

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